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6년 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년 2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1544-7878)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위원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01.31)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84833]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신흥부자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하이엔드산업(High-end Industry)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T 1544-7878, F 02-3490-9797)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효력발생일	2016년 2월 2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W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음(On-Line 가입자)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음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음(On-Line 가입자)	Wrap 계좌 및 특정권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 미만:이익금의 70%			
보수 (연,%)	판매	0.5800	0.2900	0.9300	0.4650	-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1.0300, 신탁업자보수: 0.07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200				
	기타비용	0.0022	0.0000	0.0023	0.0000	0.0018
	총보수.비용	1.7022	1.4100	2.0523	1.5850	1.1218
합성 총보수.비용	1.7585	1.4100	2.1188	1.5850	1.1671	

※ 주식사항	<p>주1) 판매 및 운용 등 보수 지급시기: 매3개월</p> <p>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종류[Class]		I	S	F	S-I	I-2
가입자격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인 투자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인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보수 (연,%)	판매	0.1000	0.3500	0.1050	0.0600	0.02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1.0300, 신탁업자보수: 0.07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0.0022	0.0016	0.0000	0.0000
	총보수.비용	1.2225	1.4722	1.2266	1.1800	1.1400
	합성 총보수.비용	1.2735	1.5402	1.2710	1.1800	1.1400
※ 주식사항		<p>주1) 판매 및 운용 등 보수 지급시기: 매3개월</p> <p>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매입 방법	<p>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p> <p>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p> <p>(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 방법	<p>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거나 해당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p> <p>(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p>
--------------	---	--------------	--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대금이 지급됩니다.
기준가	①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신흥부자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하이엔드산업(High-end Industry)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100% 이내에서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장기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 명칭: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2) 주요 투자전략: <u>주식에의 투자 (투자비율: 60% 이상)</u>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고(혁신기업), 고(高)차원의 소비문화를 창출(고부가 소비재기업)며, 또 이를 세계화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세계화 가능기업)에 주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물질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고부가 소비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 감성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 등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기업 ●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통성을 바탕으로 소비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 ■ 세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브랜드 인지도나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3)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100% 이내에서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는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가입시기(주식시장 침체기, 호황기)나 자금 납입방식(적립식, 거치식) 등에 따라서도 이익 또는 손실이 변동됩니다.

(4)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6.01.31.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정석훈	1976	이사	16개	3,971억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 2004.03~2008.03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2008.04~2016.0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해외운용팀장 - 2016.02~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해외운용본부장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투자실적 추이(연도별수익률)

(단위 :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07.07~15.07.06	13.07.07~14.07.06	12.07.07~13.07.06	11.07.07~12.07.06	10.07.07~11.07.06
종류 C	2008.07.07	16.41	20.07	18.70	4.87	31.44
비교지수		-0.72	19.67	15.24	-6.43	27.27

주1)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주요 투자위험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중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100% 수준에서 통화상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모투자신탁)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위험관리

- 회사의 최고이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규정의 재·개정 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 등을 두어 제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독립된 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며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주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3)투자위험 등급 분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턴 10년까지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 다. 비교지수
 - 라.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분배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 총회 등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업무보고서
 - 나. 수시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투자목적
 - 나. 투자금액
 - 다. 투자기간
 - 라. 투자금 회수계획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펀드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84833)									
종류 (Class)	종류A	종류C	종류W	종류I	종류S	종류F	종류S-I	종류I-2	종류Ae	종류Ce
금융투자협회 코드	AE973	AE974	AE975	AE976	AQ400	AS155	AV689	B6035	B6568	B65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84833)									
종류 (Class)	종류A	종류C	종류W	종류I	종류S	종류F	종류S-I	종류I-2	종류Ae	종류Ce
금융투자협회 코드	AE973	AE974	AE975	AE976	AQ400	AS155	AV689	B6035	B6568	B65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07.07.	최초 설정
2009.04.17.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2010.03.09.	해외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및 세법 개정분 업데이트
2011.12.15.	펀드 판매보수 적용
2012.05.0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1.16.	수수료율 및 보수율 변경
2013.07.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4.03.14.	종류형 S 신설
2014.05.01.	종류형 F 신설
2014.06.01.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2014.09.03.	종류형 S-I 신설
2015.06.1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07.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인하
2015.07.23.	종류형 I-2 신설
2015.08.07.	종류형 Ae,Ce 신설
2015.09.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6.02.29.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우.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 1544-7878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6.01.31.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정석훈	1976	팀장 (이사)	16개	3,971억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 2004.03~2008.03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2008.04~2010.01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해외운용팀 - 2010.01~2016.0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해외운용팀장 - 2016.02~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해외운용본부장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5개, 1,092억원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정석훈	2012.05.10 ~ 현재	허지욱	2012.05.10 ~ 2013.07.01
		이관우	2012.05.10 ~ 2014.03.31
		노기호	2013.05.02 ~ 2014.03.31
		조윤석	2012.05.10 ~ 2015.06.15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주2)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가.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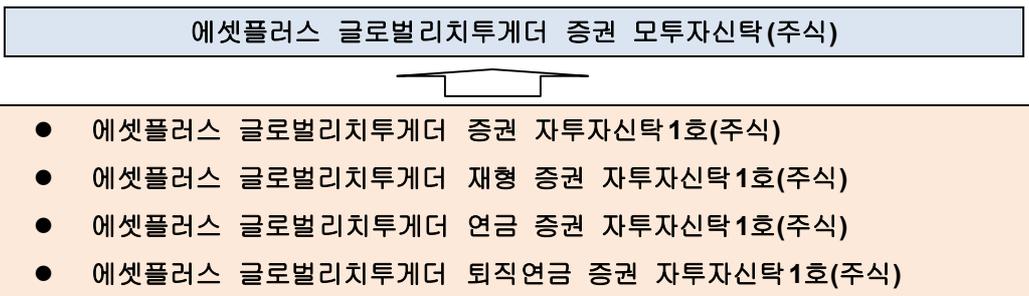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2013.01.18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음
종류 C	2008.07.07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음.
종류 W	2013.06.07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
종류 I	2014.01.20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종류 S	2014.0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종류 F	2015.05.08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종류 S-I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인 투자자
종류 I-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종류 Ae	2015.08.18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음(On-Line 가입자)
종류 Ce	2015.08.20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음(On-Line 가입자)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종류별	수수료			보수 (연,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집합투 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종류 A	납입금액의 1.00%이내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1.030	0.580	0.070	0.020
종류 C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030	0.930	0.070	0.020
종류 W	-	-		1.030	-	0.070	0.020
종류 I	-	-		1.030	0.100	0.070	0.020
종류 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1.030	0.350	0.070	0.020
종류 F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030	0.105	0.070	0.020
종류 S-I	-	-		1.030	0.060	0.070	0.020
종류 I-2	-	-	-	1.030	0.020	0.070	0.020
종류 Ae	납입금액의 0.50%이내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1.030	0.290	0.070	0.020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030	0.465	0.070	0.020

나.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 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외주식 60%이상, 국내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장기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신흥부자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하이엔드산업(High-end Industry)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	100%이내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18 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으로서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거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7)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8)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9)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10)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11)증권의 차입	2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p>주1)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p> <p>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p> <p>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p> <p>다)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주2) 상기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모두자신탁의 주요투자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80조3항 각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p> <p>◦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2)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이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5)후순위채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100% 이내에서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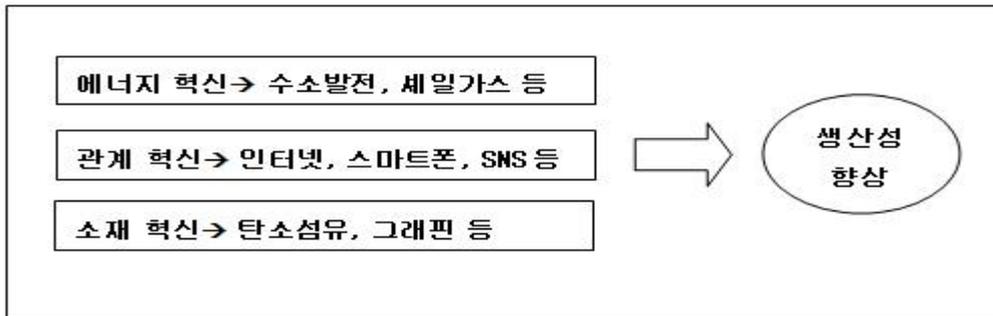
아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등은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장기 투자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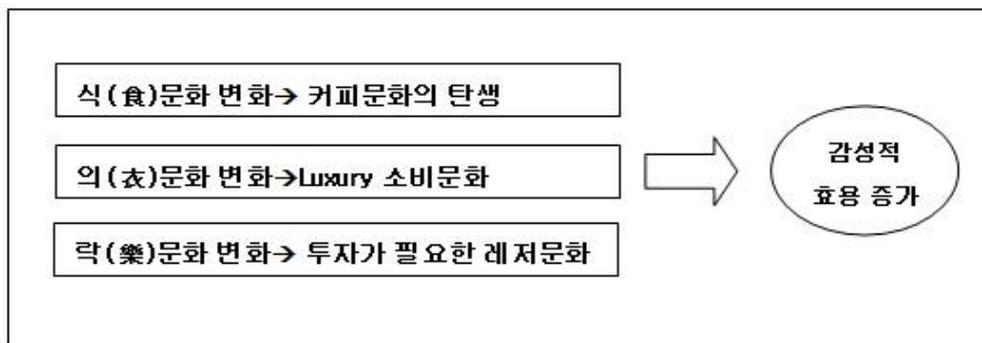
1) 주식운용전략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고(혁신기업), 고(高)차원의 소비문화를 창출(고부가 소비재기업)며, 또 이를 세계화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세계화 가능기업)에 주로 투자

- 물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기업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물질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고부가 소비재 기업
 -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 감성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 등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기업
 -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통성을 바탕으로 소비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



- 세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
 - 높은 브랜드 인지도나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2) 국내·외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② 주로 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3) 환위험 관리전략

환헷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 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통화선물 또는 선물환계약을 활용하여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환헷지 비율은 펀드가 보유한 총 외화자산 대비 환헷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 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전략에 맞추어 환헷지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USD), 홍콩(HKD), 일본(JPY), 유럽(EUR), 스위스(CHF) 통화 등에 대하여 환헷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헷지 비용은 1만 USD에 700원 수준이나, 매월 Roll over 하기 때문에 연간 헷지금액의 약 8.4Bps 내외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헷지 비율	0~100%
현재 환헷지 비율 (2016.01.31.기준)	91.7%

4) 투자대상국가 현황

순자산대비 5% 이상 주요투자지역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미국	프랑스	스위스
통 화	USD(달러)	EUR(유로)	CHF(스위스프랑)
GDP	\$16.8조	\$2.7조	\$0.65조
1인당 GDP	\$53,143	\$41,421	\$80,528
시가총액	\$22.3조	\$2.14조	\$1.57조
주요산업	서비스 79.4% 산 업 19.5% 농 업 1.1%	서비스 79.4% 산 업 18.7% 농 업 1.9%	서비스 72.5% 산 업 26.8% 농 업 0.7%
인 구	약 3억 천6백만 명	약 6천 6백만 명	약 8백8십만 명
인구증가율	0.72%	0.54%	1.06%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	14%	18%	18%
경제상황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시장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짐. 주요산업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1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임. 하지만, 이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금융 및 운송 그리고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G7국가이고, 유럽연합(EU) 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2개 국가 중 하나임.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는 국가로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81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관광 국가.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럭셔리제품과 화장품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임.	유럽연합에 인접해 있지만 이에 속하지 않은 중립국. 역사와 전통 속에 신뢰를 국가의 가장 큰 가치로 지켜오고 있음. 비교적 낮은 법인세와 청정한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몇 개의 대형 글로벌기업의 모국이 되었음. 음식료, 금융, 농업부문에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 특히, 시계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임.

자료: CIA, World Bank (2013)

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X 90%] + [CALL*10%]

[비교지수에 대한 이해]

비교지수 MSCI World Index는 선진국 23개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및 외국인 투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 종목을 선정, 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지수산출에 기준이 되는 종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또는 종목별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대형 펀드들의 주식운용 성과측정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로서 증권전산에서 제공하는 콜금리 1일물을 활용하며 현금자산에 대한 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100% 이내에서 모두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는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가입시기(주식시장 침체기, 호황기)나 자금 납입방식(적립식, 거치식) 등에 따라서도 이익 또는 손실이 변동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중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 ~ 10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모투자신탁)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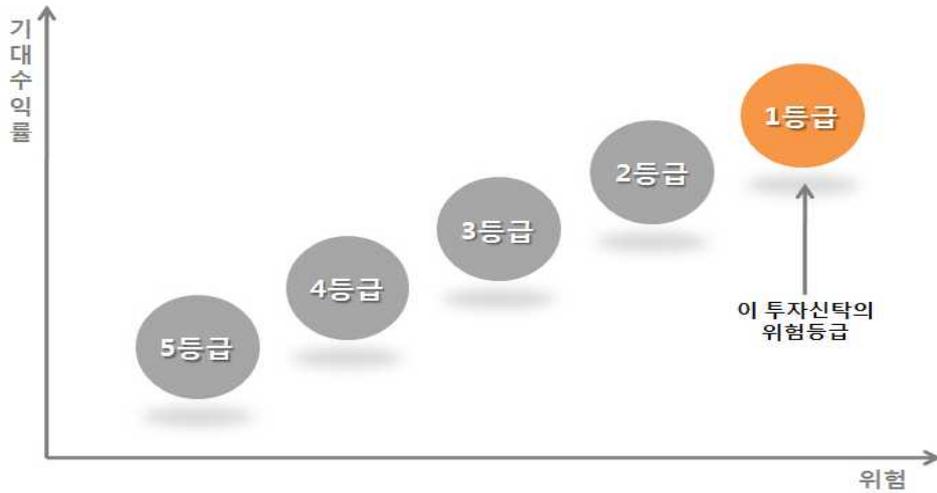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한 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원본액 유지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시장에 해당하는 각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글로벌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글로벌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등급	매우높음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음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보통	-위험자산에의 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음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음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위험자산 :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상장부동산펀드(리츠:REIT)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구 분	D+2일	D+3일
자금납입일(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거나 해당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일	D+3일	D+4일	D+8일	D+9일
환매청구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환매수수료율	부과시기
종류 A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W	
종류 I	
종류 S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F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S-I	
종류 I-2	없 음
종류 Ae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e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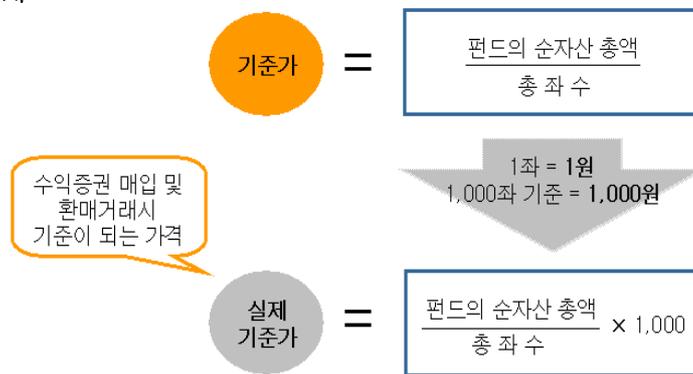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	------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장의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⑨외국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⑩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⑪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주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원 :

1.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2. 준법감시인
3.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부서장
4.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5.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자

주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00%이내	해당사항 없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해당사항 없음
종류 C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W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I				
종류 S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F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해당사항 없음
종류 S-I				
종류 I-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Ae	납입금액의 0.50%이내	해당사항 없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해당사항 없음
종류 Ce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 관련 보수현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W	종류I	종류S	종류F	종류S-I	종류I-2	종류Ae	종류Ce	
집합투자업자 보수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1.0300	매3개월 후 급
판매회사 보수	0.5800	0.9300	0.0000	0.1000	0.3500	0.1050	0.0600	0.0200	0.2900	0.4650	
신탁업자 보수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0.0022	0.0023	0.0018	0.0025	0.0022	0.0016	0.0000	0.0000	0.0000	0.0000	
총보수.비용	1.7022	2.0523	1.1218	1.2225	1.4722	1.2266	1.1800	1.1400	1.4100	1.5850	
기타비용(모펀드)	0.0563	0.0665	0.0453	0.0510	0.0680	0.0444	0.0000	0.0000	0.0000	0.0000	사유발생시
합성 총보수.비용(TER)	1.7585	2.1188	1.1671	1.2735	1.5402	1.2710	1.1800	1.1400	1.4100	1.5850	
증권거래비용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1) 기타 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종류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280,246	668,226	1,095,974	2,367,118
종류 C	217,177	684,650	1,200,040	2,731,629
종류 W	119,628	377,126	661,019	1,504,665
종류 I	130,534	411,508	721,281	1,641,839
종류 S	157,871	497,687	872,334	1,985,678
종류 F	130,278	410,700	719,865	1,638,616
종류 S-I	120,950	381,295	668,325	1,521,296
종류 I-2	116,850	368,370	645,670	1,469,727
종류 Ae	194,525	505,615	848,592	1,867,820
종류 Ce	162,463	512,163	897,708	2,043,43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주)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5.07.06	2014.07.06	2013.07.06
운용자산	91,347,532,497	37,846,476,028	14,138,613,292
증권	90,460,962,450	37,675,463,008	14,046,443,40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66,570,047	171,012,020	31,439,834
기타 운용자산	0	0	60,730,049
기타자산	2,132,112,257	5,533,183,800	14,391,680
자산총계	93,479,644,754	43,379,659,828	14,153,004,97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3,990,038,034	10,879,073,933	2,281,861,976
부채총계	13,990,038,034	10,879,073,933	2,281,861,976
원본	79,728,502,638	32,500,585,895	11,871,149,86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0	0	-6,866
자본총계	79,489,606,720	32,500,585,895	11,871,142,996
손익계산서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4.07.07~2015.07.06	2013.07.07~2014.07.06	2012.07.07~2013.07.06
운용수익	6,434,857,001	4,361,154,188	2,359,286,936
이자수익	6,285,475	4,364,234	2,722,121
배당수익	6,967,376,872	2,479,895,579	821,161,855
매매/평가차익(손)	-538,805,346	1,876,894,375	1,535,402,960
기타 수익	80,387,399	4,819,830	1,846,966
운용비용	930,081,251	507,687,225	271,558,006
관련회사 보수	928,996,481	507,071,065	271,256,586
매매수수료	1,084,770	616,160	301,420
기타 비용	1,650,000	1,870,000	1,430,000
당기순이익	5,583,513,149	3,856,416,793	2,088,145,896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종류 A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41	41	237	272	63	71	215	251
2013.07.07 ~ 2014.07.06	2	2	48	56	9	11	41	49
2013.01.18 ~ 2013.07.06	0	0	3	3	1	1	2	2

- 종류 C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222	222	298	333	131	146	389	453
2013.07.07 ~ 2014.07.06	117	117	158	175	53	59	222	266
2012.07.07 ~ 2013.07.06	117	117	49	54	49	53	117	139
2011.07.07 ~ 2012.07.06	121	121	72	71	76	76	117	123

- 종류 W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0	0	22	26	0	0	22	25
2013.07.07 ~ 2014.07.06	0	0	0	0	0	0	0	0
2013.06.07 ~ 2013.07.06	0	0	0	0	0	0	0	0

- 종류 I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50	50	101	101	51	52	100	98
2013.07.07 ~ 2014.07.06	0	0	100	100	50	51	50	51

- 종류 S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12	12	73	82	17	19	68	80
2013.07.07 ~ 2014.07.06	0	0	12	13	0	0	12	13

- 종류 F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0	0	4	4	0	0	3	3
2013.07.07 ~ 2014.07.06	0	0	0	0	0	0	0	0

- 종류 S-I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7.07 ~ 2015.07.06	0	0	0	0	0	0	0	0
2013.07.07 ~ 2014.07.06	0	0	0	0	0	0	0	0

- 종류 I-2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000.00.00 ~ 0000.00.00	0	0	0	0	0	0	0	0

- 종류 A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000.00.00 ~ 0000.00.00	0	0	0	0	0	0	0	0

- 종류 C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000.00.00 ~ 0000.00.00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7.07~15.07.06)
집합투자기구	18.81	20.64	20.40	19.19	13.05
참고지수	-0.72	9.00	11.04	10.26	3.6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1.18~15.07.06)
종류 A	16.81	18.63	-	-	17.56
참고지수	-0.72	9.00	-	-	9.26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7.07~15.07.06)
종류 C	16.41	18.22	18.38	17.98	12.24
참고지수	-0.72	9.00	11.04	10.26	3.6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6.07~15.07.06)
종류 W	17.50	19.32	-	-	18.01
참고지수	-0.72	9.00	-	-	8.58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01.20~15.07.06)
종류 I	-	-	-	-	-33.05
참고지수	-	-	-	-	-19.4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04.23~15.07.06)
종류 S	17.08	-	-	-	18.71
참고지수	-0.72	-	-	-	3.46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7.07~15.07.06)
종류 F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7.07~15.07.06)
종류 S-I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0.00.00~00.00.00)
종류 I-2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0.00.00~00.00.00)
종류 Ae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0.00.00~00.00.00)
종류 Ce	-	-	-	-	-
참고지수	-	-	-	-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집합투자기구	18.81	22.51	19.92	4.87	31.44
참고지수	-0.72	19.67	15.24	-6.43	27.27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	16.81	20.47	-	-	-
참고지수	-0.72	19.67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C	16.41	20.07	18.70	4.87	31.44
참고지수	-0.72	19.67	15.24	-6.43	27.27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W	17.50	21.18	-	-	-
참고지수	-0.72	19.67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I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S	17.08	-	-	-	-
참고지수	-0.72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F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S-I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I-2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e	-	-	-	-	-
참고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Ce	-	-	-	-	-
참고지수	-	-	-	-	-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 권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KRW	-	-	-	90,461	887	2,132	93,480
	-	-	-	(96.77)	(0.95)	(2.28)	(100.00)

※ 투자대상 모펀드 비중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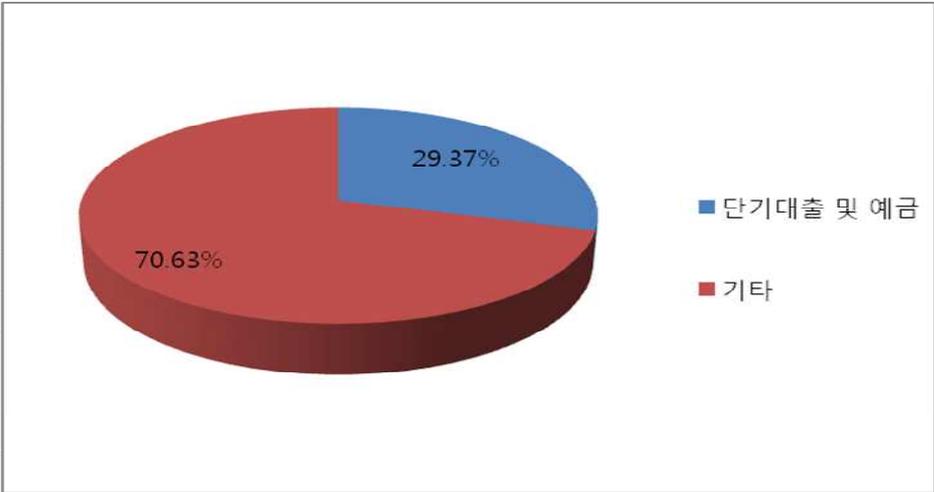
모펀드	평가액	비중
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0,460,962,45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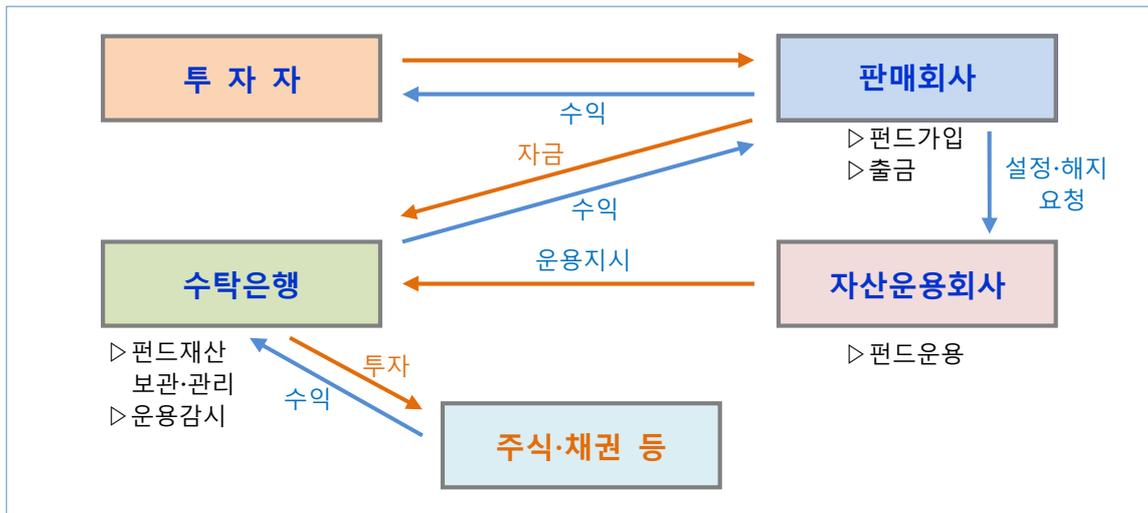
※ 모펀드 이외의 투자비중

(단위: 원, %)

자산구분	신용등급	평가액	비중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886,737,664	29.37%
기타	기타	2,131,944,640	70.63%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연락처 : 1544-7878, www.assetplus.co.kr)
회사 연혁	1999.02. 이강금융컨설팅주식회사 설립 1999.07.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3.09. 지방행정공제회 및 정보통신부 위탁운용사 선정 2004.09.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 적립식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2005.09.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국민연금관리공단) 2005.09.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2회 연속)(국민연금관리공단) 2008.06.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및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로 상호 변경 2009.12. * 2009 펀드대상 루키상(머니투데이-모닝스타)-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0.02. 2009 한국펀드대상 국내투자 라이징스타(매일경제) 2010.03. 제1회 아시아펀드대상 뉴페이스상(아시아경제) 2011.12. 201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부문 우수상(이데일리-KG제로인) 2011.07. 제1회 이해하기 쉬운 자산운용보고서 평가 우수상(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3.02. 제12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중소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3.03. 201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KG제로인) 2014.03. * 2014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중국주식 최우수상(KG제로인)-차이나리치투게더펀드 2014.06. 2014 아시아인베스터 코리아어워즈 최우수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아시아인베스터) 2014.12. 제4회 올해의 마켓리더대상 국내주식부문 베스트자산운용사(이투데이) 2014.12. 2014 대한민국펀드대상 베스트자산운용사(머니투데이) 2015.02. * 201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일반주식 최우수상(KG제로인)-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5.02. 제14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대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5.03. 제6회 아시아펀드대상 '베스트운용사'(아시아경제) 2015.03. * 코리아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즈 일반주식형 '올해의 펀드'(머니투데이 더벨)-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5.05. 아시아인베스터 에셋 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운용사'(아시아인베스터) 2015.09. 아시아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 올해의 자산운용사, 최우수 국내주식형 중소형 운용사, 최우수 해외주식형 운용사(2회 연속)(아시아인베스터)
자본금	111.9억원 (자기자본 381.5억원)
주요주주	강방천(48.15%), 임직원(8.66%)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4.12.31	2013.12.31	계정과목	2014.01.01 ~ 2014.12.31	2013.04.01 ~ 2013.12.31
유동자산	143	78	영업수익	154	56
비유동자산	348	316	영업비용	89	50
자산총계	491	394	영업이익	65	6
유동부채	36	43	영업외수익	5	0
비유동부채	199	150	영업외비용	10	1
부채총계	235	193	세전순이익	60	5
자본금	111	111	법인세비용	4	0
이익잉여금	145	90			
자본총계	256	201	당기순이익	56	5

라. 운용자산 규모 (2016.01.31.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파생포함)	특별자산 (파생포함)	혼합자산 (파생포함)	투자일임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수탁고	18,670	3,876	-	2,740	-	-	-	33,940	59,22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 (02)3455-2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cit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외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가) 의 무

-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책 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 02) 2180-04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여의도동) ☎ 02) 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턴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역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사항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매매체결업무 수수료 및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2.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회사별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4. 세미나, 리서치 자료 등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유용성
중개회사 선정시 금지사항	1. 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됨. 2.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됨.
매매배분 기준	1.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2. 대량매매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용 가능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투자목적 : 집합투자기구 운용 책임성 강화 및 고유재산 운용수익 제고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나. 투자금액 : 증권신고서 변경 기준일 현재 ₩3,495,011,442원이며,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투자기간 : 1년 이상 투자 예정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손익 또는 자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투자금 회수계획 : 고유재산 자금 필요시 또는 회사의 손익구조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신탁업자 : 기존 제출분과 동일하므로 첨부를 생략함.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 기존 제출분과 동일하므로 첨부를 생략함.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예비투자설명서

2. 간이투자설명서

3.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 사본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 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